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4

제출연월일 : 2025. 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지원조례의 홍보 및 포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 군민의 문화시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: 안 제7조

(신설)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.

나. 굿매너 문화시민 선정을 위한 근거 마련 : 안 제8조

(신설)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30,000천원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5. 6. 20.~2025. 7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957호, 행정담당관-15023(2025. 6. 20.)호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8552(2025. 6. 9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8552(2025. 6. 9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22708(2025. 6. 19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1971(2025. 7. 31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제9조로 하고,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홍보)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7조(홍보)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.
<신 설>	제8조(포상)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7. (생 략)	9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▢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7조(홍보) : 문화시민운동 홍보물 제작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이 시 균
연락처	(033) 330 - 2210